##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409

발의연월일: 2024. 8. 30.

발 의 자:민병덕・이기헌・박성준

김병주 • 이언주 • 윤후덕

서미화 · 오세희 · 이재정

김태선 · 강준현 · 윤건영

이강일 • 백혜련 • 송기헌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발전을 위한 정책을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한 청년정책의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전산정보 등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자료 협조 가 원활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등).

법률 제 호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제25조의2로 하고, 제6장에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자료의 제공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정책의 수립・

시행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제3호 중 "제25조"를 "제25조의2"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lt;신 설&gt;</u>	제25조(자료의 제공 요청) ①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u>따라야 한다.</u>
<u>제25조</u> (권한의 위임·위탁) (생	<u>제25조의2</u> (권한의 위임·위탁)
략)	(현행 제25조와 같음)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제)
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	
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제25조</u> 에 따라 위탁받은 업	3. <u>제25조의2</u>
무에 종사하는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 및 공공기관	
의 임직원	